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437
----------	-----

제출년월일 : 1995.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 이유

-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 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 하고자 함

□ 주요 골 자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개정에 따른 시군정원, 직렬, 기능조정권한 삭제
- 수산자원보전지구내 행위제한 위반사실조사 및 위반자 조치
- 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 환지 계획 인가
- 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큰 거 법령

- 지방자치법제102조제1항 ----- 따로붙임
- 국토이용관리법제15조제1항제5호 ----- 따로붙임
- 도시재개발법제10조제1항 ----- 따로붙임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47조제1항 ----- 따로붙임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3조 ----- 따로붙임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권한위임 사무중 지방과 소관사무 제10호 내지 제13호는 이를 삭제하고 제14호는 제10호로 한다.

(별표1) 권한위임 사무중 축산과 소관사무 제55호 다음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축 산 과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보전지구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산자원보전지구 관리 나. 보전지구내 행위제한 위반사실조사및 위반자 조치 다. 오염원 조사 및 조치 라. 오염사고 발생시 환경오염도 조사 미. 수산자원보전사업 실시 마. 표지판 설치 사. 관리부 미치 및 보고 아. 현지 지도 감독 	국토이용관리법 동법제14조의2, 제26조 동법제15조제1항 제5호, 제17조 수자원보전지구관리요령제6조 동관리요령제7조 제3항 동관리요령제8조 동관리요령제9조 동관리요령제10조 동관리요령제12조

(별표1) 권한위임 사무중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 제8호 다음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분 야 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시개발과	9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계획 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동법제76조의2제2항 도시재개발법제9, 10, 11조 도시개발법제62조
	10	○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 인가	
	11	○ 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12	○ 재개발사업시행의 지도감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